

예 산 총 칙

2026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566,995,942	47,009,878
일반회계	1,376,594,180	41,297,825
특별회계	190,401,762	5,712,053
공기업특별회계	171,919,483	5,157,58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4,429,618	1,032,88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7,489,865	1,724,696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80,000,000	2,400,000
기타특별회계	18,482,279	554,46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13,100	9,393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6,713,800	201,414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483,641	134,509
수질개선특별회계	6,415,309	192,459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556,429	16,693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6,950,563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86,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